

인천지방법원 2021. 8. 25 선고 2020나221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1. 8. 25 선고 2020나2212 판결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. 6. 5 선고 2019가단9783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1. 6. 16.

판결선고 2021. 8. 25.

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. 6. 5. 선고 2019가단9783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55,6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12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제1심에서 원금 40,000,000원 및 이자 15,600,000원을 합한 55,6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, 위 이자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청구는 아래 항소취지와 같이 감축한 것으로 본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12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양민호, 판사 김범진, 판사 김 현